

| 목차 |

I.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배경 및 관련법령 이해

제1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배경

01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도입 배경과 의의 10	
1. 도입배경	10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11
02절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 14	
1. 국가회계의 의의와 현황	14
2. 국가회계의 목적 및 이용자	16
3. 국가회계정보의 특징 : 기업회계와의 차이	18

제2장

국가회계 관련법령 이해

01절 개 요 22	
1.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22
2.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25
3. 국가회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구성	27
02절 국가회계법 28	
1. 국가회계법의 목적	28
2. 국가회계법의 적용대상	28
3. 국가회계법의 주요내용	31

03절 국가회계법 시행령 | 36

1.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36
2. 결산보고서 체계화 및 결산 규정 정비에 따른 세부규정 정비	37
3. 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10.8월 입법예고)	40
<첨부 1> 국가재정법	
<첨부 2> 국가회계법	
<첨부 3> 국가회계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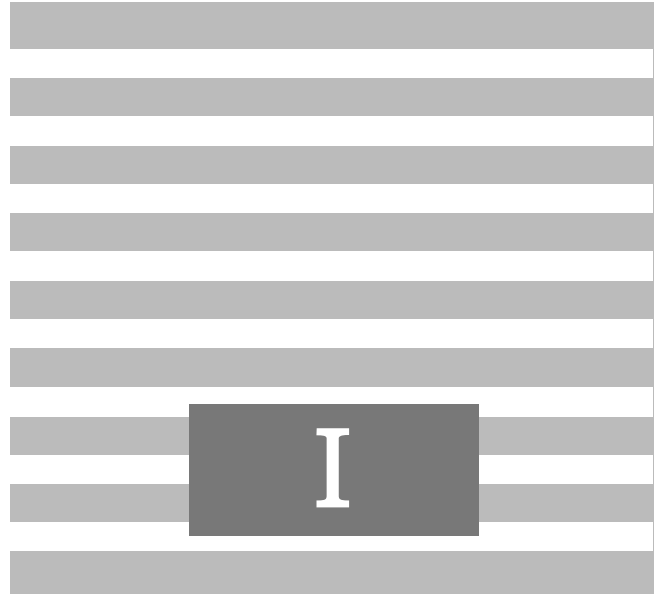
II. 회계업무흐름과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의 연계

제1장 업무처리과정과 복식부기의 연계

01절 업무처리과정과 복식부기의 연계 92	
1. dBrain 업무처리와 복식부기의 관계	92
2. 세출	92
3.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잘못된 회계처리	99
4. 수입	103

제2장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01절 성격 및 체계 108	
1.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성격	108
2.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체계	109
02절 연계의 의의 및 필요성 111	
1. 연계의 의의	111
2. 연계의 필요성	112
03절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방안 및 유의사항 114	
1.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방안	114
2. 연계 시 유의사항	115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배경 및 관련법령 이해

제 1 장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배경**

01 절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도입 배경과 의의

1. 도입배경

-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다양한 재정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인식. 시민단체, 학자, 일부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이하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
-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부문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과관리제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성, 투명성, 회계보고책임성의 제고를 목표로 한 재정개혁이 추진됨.

표 1-1 | 세계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국가	발생주의 회계 도입연도(중앙정부)
스페인	1989
뉴질랜드	1993
스웨덴	1993
호주	1994
미국	1998
영국	2002
캐나다	2003
핀란드	2005
프랑스	2006

자료 : Andy Wynne "Accrual accounting for the public sector-A Fad that has had its day" International Journal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2008

-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도입은 1998년 5월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1998년 6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제도를 동시에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음.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이 2007년 10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가 함께 포함되어 본격 적용됨. 다만, 국회에는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제출함.
- 국가회계법 제정 이후 기획재정부는 2009년 3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공표하였으며, 이어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및 실무적용을 위해 용자회계준칙, 원가계산준칙 등 ‘항목별회계처리준칙’(2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3개) 및 국고금회계, 기금회계, BTO·BTL 등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준칙’(11개)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에 시달하였음.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발생주의(Accrual Basis of Accounting)는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기준을 두어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경제적 자원이 소비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
 - 경제적 자원은 국고금과 같은 현금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소유의 채권과 부동산 및 미수금과 미수수익 같은 모든 자원으로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도로 회계기록의 초점을 경제적 자원의 변동 여부에 맞추기 때문에 발생주의회계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잘 표시하게 됨.

구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기록 시점	현금출납시점	거래발생시점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 당시 가치로 기록 후 금액 불변 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장부에 계속 표시되어 실제가치가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출납이 없더라도 거래 발생시 기록 • 실제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상각하여 순수채권만 표시

-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자산합계는 부채와 자본(순자산)의 합계라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회계거래의 완전성과 오류발생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방식.
- 따라서 과거의 예산중심 회계에서는 정의되지 않았던 국가의 자산, 부채와 순자산의 개념이 정의되고 기록됨.

구분	단식부기	복식부기
기록 방식	수입·지출사실을 기록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와 연계하여 기록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부채는 별도로 비망 기록 • 산출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수입·지출이 자산·부채의 증감과 미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부채 변동을 동시에 기록 •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거래누락시 자동 파악(수입·지출이 자산·부채의 증감과 연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효과
 -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관리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적·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해짐.

과거 회계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가 개별적으로 결산되어 국가 자산·부채의 일괄적 파악이 곤란 • 순자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나타난 국가자산 및 부채를 통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순자산 규모가 산출되어 재정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 및 분석이 가능해짐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구축(예산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사업별 투입 원가정보의 산출을 통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입성가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짐.

과거 회계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투입통제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 정책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고 사업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회계·기금별로 결산되며, 부처별 통합결산은 작성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 정책사업별 투입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 • 중앙관서 단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중앙관서의 책임성 강화

- 투명하고 양질의 국가 재정정보 제공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검증기능으로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

과거 회계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대비 결산의 통제가 주된 목적으로 결산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재무분석이 어려움 • 단식부기의 한계로 인하여 회계기록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가 용자의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 •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에 따른 회계기록의 자동 검증기능 강화

02절 |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

1. 국가회계의 의의와 현황

- 국가회계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회계를 공식적으로 칭하는 말
- 국가회계는 국가의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관서 및 그 하부조직과 국가사업 운영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금에 적용됨.
-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는 1960~1970년대에 도입되고 정착된 예산회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예산회계는 예산편성-집행-결산을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으로 기록하여 예산의 집행실적을 명확히 제시하며 예산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가회계절차의 최종산물인 결산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이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라기보다는 예산집행의 결과를 의회 등 특수한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제한적 정보만을 담고 있음.
- 발생주의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된 2009회계연도부터는 국가결산보고서에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가 함께 포함됨. 국가회계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표 1-2>와 같이 단순화 됨.

표 1-2 | 국가회계 결산보고서

국가회계법 제정이전 결산서류	국가회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2009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계속비결산보고서 • 예비비사용총괄서 • 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 • 기금결산보고서 • 국가채권현재액총계산서 •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 개요 • 세입세출결산 • 재무제표(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성과보고서

-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기 위한 회계절차를 ‘재무회계’라고 함. 국가의 재무회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 국가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및 그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
 -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 공표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재정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된 제도임.
 - 선진국 수준의 국가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
- 재무회계는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결산 정보에 국가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임.

표 1-3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비교

구 분	재 무 회 계	예 산 회 계
의 의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프로그램예산제도)
회계방식	발생주의·복식부기	현금주의·단식부기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및 기금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 산 보 고 서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세입세출결산서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보고형식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가치지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
자기검증 기 능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	없음

2. 국가회계의 목적 및 이용자

(1) 국가회계의 목적

- 국가회계법 제1조에서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국가회계기준 제5조에서 “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서술
 - 유용성(usefulness)은 기업회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회계정보가 그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적정성(appropriateness)의 개념은 기업회계에서도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등을 의미하는 상식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가 공공회계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②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③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국가회계기준 제3항 및 제4항)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국가재무보고는 회계책임의 이행에 대한 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의 회계책임은 일반적으로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 운영관리책임(management accountability) 및 재무보고책임(reporting accountability)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수탁관리책임은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자원의 유입·유출 등 재정상태의 변화를 기록·보고함으로써 자원의 보호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
 - 운영관리책임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책임.
 - 재무보고책임은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2) 국가회계정보의 이용자

- 국가회계정보의 주된 이용자는 의회, 국민과 시민단체, 행정책임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욕구를 가짐.
 - 의회
 - 의회는 의회가 승인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과도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 사업에 목적하였던 대로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행정서비스 활동에 대한 자금의 사용관계에 대한 정보 및 차기 예산편성의 참고자료 등 정보를 필요로 함. 결산서 등 국가회계에 대한 보고서는 이와 같은 목적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함.

-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 일반국민은 납세자와 유권자로서 국가의 회계정보에 관심을 가짐. 납세자는 자신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국가회계보고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유권자 역시 자신이 선출한 공직자가 업무를 성실하고 유능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며 국가회계보고서가 공직자의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또한, 행정서비스의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선거에서 어떤 공직자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함.
- 행정책임자, 사업수행자 등
 - 행정부 등의 책임자, 국가의 사업수행자 등은 국가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정보, 특정 사업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필요로 함.
 - 예산편성업무 관계자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기구 는 예산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국가회계 정보를 필요로 함.
- 기타 이해관계자
 - 국가에 물품을 조달하는 사업자는 국가가 발주한 사업이나 향후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사업집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함.
 - 기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조직 등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또한 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예산 및 사업집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함.

3. 국가회계정보의 특징 : 기업회계와의 차이

- 국가회계에 있어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기업회계와 유사성이 증가하였으며 기업회계의 많은 부분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국가회계환경은 기업의 회계환경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 국가회계(재무회계 측면)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표 1-4 |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구 분	국 가 회 계	기 업 회 계
목 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당기순이익이 중요하지 않음 - 국가가 제공한 행정서비스(정책사업)별 원가산출 및 평가가 중요 - 비교환수익과 비교환비용이 중요하며 수익·비용 대응이 반드시 되지 않음	영리(이윤극대화) - 당기순이익이 중요 -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하여 나타낸 손익계산서가 중요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법적통제	수입, 지출, 재산관리, 채무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법적 통제를 받음 - 예산 : 초과지출을 방지하는 법(예산회계법)적 통제수단 - 수입·지출 : 수입·지출의 절차가 법(국고금관리법)에 엄격히 규정 -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취득·매각 절차가 법(국유 재산법)에 엄격히 규정	모든 기업활동에서 법적 통제는 없음 - 예산 : 기업의 목표를 제시하는 참고적 의미 - 수입·지출, 재산, 채무 등 모든 거래는 예산과 관련도가 낮고 기업의 자율적으로 발생됨
이용자	국가회계의 정보이용자는 국민 등으로 국가와 간접적으로 관련	기업회계의 정보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등으로 기업과 직접 관련
자산의 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 포함 (예) 공공용자산, 전비품, 문화재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만을 자산으로 규정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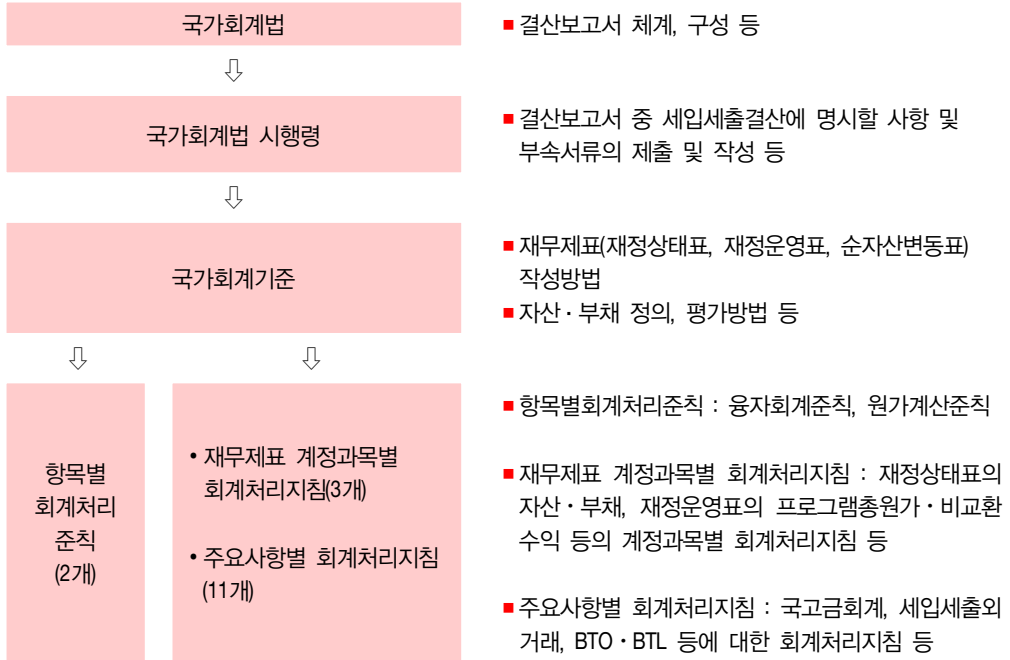
국가회계 관련법령 이해

01 절 | 개요

1.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 국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체계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서의 국가회계기준으로 구성
 -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국가회계기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하는 사항 등으로서 항목별 회계처리준칙, 재무제표 계정과목별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사항별 회계처리지침 등을 포함.
-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기준 제3조), 융자회계준칙(기준 제45조 3항), 원가 계산준칙(기준 제31조 2항), 연금충당부채 등 회계처리방법(기준 제44조) 등

그림 2-1 |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참고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등 제정 현황

성격	법제명	주요 내용	비고
부령	국가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작성방법 자산·부채 정의 및 평가방법 등 	'09.3.19 제정
준칙 (고시)	융자회계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방법 	'09.6월
	원가계산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별 원가계산을 위한 간접원가 배부방법 등 	'09.6월
회계 처리 지침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부채의 계정과목별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09.6월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운영표를 구성하는 수익·비용의 계정과목별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09.7월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 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자산변동표와 국세징수활동표를 구성하는 주요 계정과목별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및 사례 	'09.8월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國庫)로 불입되는 수입금 및 세출예산에 따른 지출금의 회계처리방법 	'09.8월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 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재정법상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관리되던 국가채무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처리방법 및 해설 	'09.10월
	금융 및 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계약의 경제적 실질(위험과 효익의 이전여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09.10월
	기금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금 및 부담금 등 기금의 주요 재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09.10월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세출외거래의 주요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회전자금, 우체국예금·보험, 보관금 등 	'09.11월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형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해설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2010회계 연도까지 감가상각 유예 	'09.11월
	통합재무제표 작성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제거 및 자산·부채 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 	'09.11월
채권·채무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성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09.12월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BTO, BTL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사례	'09.12월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 우발자산·부채 등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10.3월

2.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1) 국가재정법

- 국가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 재정운용의 일반원칙 및 예산편성·예산집행·성과관리·결산·국가채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중앙관서별 소관 회계·기금에 대한 통합결산보고서 작성체계 규정
-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출

표 2-1 | 국가재정법의 구조

법조문 편제	내용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5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제27조
제2절	예산의 편성	제28조~제41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제55조
제3장	결산	제56조~제61조
제4장	기금	제62조~제85조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제92조
제6장	보칙	제93조~제101조
제7장	벌칙	제102조

(2) 국가회계법

-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등에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
 -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표 2-2 | 국가회계법의 구조

법조문 편제	내용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
제3장	결산	제13조~제16조
제4장	보칙	제24조~제28조

(3)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 결산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은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절차 및 일정을 규정
 - 중앙관서결산보고서 →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검사 → 국회제출
 (2월말) (4.10일) (5.20일) (5.31일)
 - *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에 명시
-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등을 규정

3. 국가회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구성

그림 2-2 | 결산보고서의 구성



02절 | 국가회계법

1. 국가회계법의 목적

- 「국가회계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
 - 국가자산 및 부채 등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순자산 규모가 산출되어 재정건전성 등 각종 지표 및 분석 가능
- 사업별 투입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
 - 정책사업(프로그램)별 투입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
 - 중앙관서단위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어 중앙관서의 책임성 강화

2. 국가회계법의 적용대상

- 「국가회계법」은 국가에 속하는 모든 회계실체(국가회계실체)의 회계처리가 동일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국가의 모든 회계(일반·특별)·기금에 대하여 적용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 특별회계는 ①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②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③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표 2-3 | 국가회계법 적용대상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10.6월 현재)

	중앙관서	인원	특별(18)	정부기금(38)	민간기금(24)
1	대통령실				
2	국회				
3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4	국가정보원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	감사원				
7	헌법재판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국무총리실				
10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	공자관리, 외평, 복권, 대외경제협력	산업기반신보(금)
11	교육과학기술부		책특(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가장학(금), 과학기술진흥, 원자력연구개발	사학연금, 사학진흥
12	통일부			남북협력	
13	외교통상부				국제교류
14	법무부		교도작업		
15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국방군사시설이전	군인복지, 군인연금	
16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
17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관광진흥개발, 지역신문발전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킨흥, 언론진흥, 영화발전
18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 농지	

			농어촌특별세관리 기업특별(양곡)	관리, 축산발전, FTAO 행지원, 양곡증권정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직 불, 농작물재해재보험, 수산발전	
19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사업,우체국 보험, 기업특별(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전력산업기반, 정보통신진흥, 방사성폐기물관리(*)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수출보험(금)
20	보건복지부		책특(국립의료원 외 8개 병원)	국민건강증진, 국민연 금, 응급의료	
21	환경부		환경개선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섬진강
22	고용노동부			임금채권, 고용, 장애인 고용, 산재보상	근로복지진흥
23	여성가족부			여성발전, 청소년육성	
24	국토해양부		교통시설, 혁신도시건설, 책특(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민주택	
25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 농어가목돈마련(금)	신보(금), 기신보(금), 농신보(금), 주신보(금), 예보채상환기금(금), 부실채권정리(금), 구조조정기금(금)(*)
26	법제처				
27	국가보훈처			보훈, 순국선열애국지 사사업	
28	공정거래위원회				
29	국세청				
30	관세청				
31	조달청		기업특별(조달)		
32	통계청				
33	병무청				
34	방위사업청				
35	경찰청		책특(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병원)		
36	소방방재청				

30 I.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배경 및 관련법령 이해

37	기상청				
38	문화재청				
39	농촌진흥청				
40	산림청		책특(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및진흥
42	특허청		책특(특허관리)		
43	식품의약품안전청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5	해양경찰청				
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47	국가인권위원회				
48	국민권익위원회				
4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09.11월 위원회 활동종료				
50	과거사정리위원회				
51	특임장관실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은 '0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다만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은 '09년만 운용되고, '10년에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승계되었음
(**) 국가재정법 별표3에 따른 금융성 기금은 11개임

3. 국가회계법의 주요내용

(1) 국가회계의 원칙

- 국가회계법은 신뢰성 및 충분성과 이해가능성을 국가회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함.

-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 명료하여야 함.

(2)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
 -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
-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
 - ※ 회계책임관의 업무
 -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기타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기금관리주체는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간 회계제도의 연계

※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4) 결산의 수행

-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직전 회계연도기준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이상인 기금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심의 및 대통령승인을 받음

(5) 결산보고서의 작성 방법

- 결산보고서 각 구성서류별 작성방법을 통합하여 규정

구성서류	작성방법
결산개요	결산내용은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세입세출결산 (기금은 수입지출결산)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6)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
 - 계속비 결산명세서
 - 총액 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이월명세서
 -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명세서
 - 성인지결산서
 - 예비금사용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운용명세서
-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의 첨부서류
 - 재원조성실적표
 - 기타서류
-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 통합재정수지표
 -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 국가채무관리 보고서
 - 국가채권 현재액 보고서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보고서

(7)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지도 및 조사를 수행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

(8)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시기

- '09.1.1일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되,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은 2011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
- 다만, '09~'10년 결산시에 기금,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이미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제출

03절 | 국가회계법 시행령

1. 새로운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차관)의 구성
 - 위원 구성(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구분	자격요건 및 인원
• 위원장(1명)	• 기획재정부 차관
• 정부위원(4명)	• 재정부 2인(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 감사원 1인(국가회계 관련 업무 담당국장급) • 행정안전부 1인(국가회계 관련 업무 담당국장급)
• 민간위원(10명이내)	• 공인회계사단체 추천 1인 • 정부 및 공공기관 회계 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1인 •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험자 8인 이내

※ 간사(1명) :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회계제도과장)

- 위원회의 운영 등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장이 직무수행 곤란시 위원장 지명자가 직무를 대행
 -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설치 가능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가능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

(2) 실지지도 및 조사 방법 규정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업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지도 및 조사를 실시(회계법 §26①)
 - 이 경우 실지지도 및 조사를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

2. 결산보고서 체계화 및 결산 규정 정비에 따른 세부규정 정비

(1)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수입지출결산 세부작성방법

- 현재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수입지출결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
 - 세입세출결산
 - 세입 :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세출 :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가액, 초과지출액,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기금 수입지출결산
 - 수입 : 당초 수입계획액, 수정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지출 : 당초 지출계획액, 수정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작성방법 등(시행령 §5)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작성범위 등에 관한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국가회계법 시행령으로 이관
 - 계속비 결산명세서 제출시점
 -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을 지출하는 연도에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금 수입지출결산의 부속서류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첨부
 -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 등의 사유로 국회 사전승인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사후에 보고(국가재정법 §70④)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작성범위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작성대상인 국가의 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 국가자산 관리에 대한 결산서류인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첨부

(3) 성인지 결산서 작성방법(시행령 §6)

- 성인지 결산서 관련 현행 국가재정법 규정(국가재정법 시행령 §26)을 국가회계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 성인지 결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그 밖에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 성인지 결산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제출

(4) 기금결산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규정 등

-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장이 아닌 기금 중 기금운용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결산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회계법 §13②)
- 회계감사대상 기금의 기준,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 국회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규정(§73①)을 국가회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대상 기금의 기준이 변경
 - (종전)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 자산규모 기준
 - (개정)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 + 기금운용규모 기준

※ 자산규모에서 기금운용규모로 변경한 이유

- 자산규모는 기금운용결과 회계연도말 현재 재무상태만을 표시하는 반면
 - 운용규모는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규모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취지를 잘 반영한 것임

■ 회계감사 대상 기금의 기준

- (종전) 직전회계연도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현행) 직전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 5,000억원 이상
-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금관리주체의 업무부담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조정
 - * 대상 기금이 12개 감소(25개 → 13개)

■ 회계법인 선정·통보절차

- 기금관리주체는 6월말까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14일 이내 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회계법인 선정기준

- 기금회계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회계법인을 선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③항~⑤항) 준용

- 특수관계(임원·사용인 관계, 당해 기금의 재무제표 작성업무 수행 등)가 있는 회계법인은 선임 금지
- 연속하여 6회계연도 감사업무 수행 금지
- 연속하여 3회계연도 감사 수행시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2/3이상 교체

- 독립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재정부장관이 재선정 요구

■ 기타

-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재정부장관이 별도 규정
-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 포함.

3. 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10.8월 입법예고)

(1)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 및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운영

-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회계관계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분석 등으로 명확히 규정
- 국가회계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라 내부통제 등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각 부처 1급상당)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범위 등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통계작성 등의 업무 위탁
 - *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가능
-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감독 근거 명시

(3)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등

- 효율적·체계적 국가회계 교육을 위해 연도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 실시

(4)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 세부내용

- 성인지 기금결산서 도입('10.5.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성평등 효과분석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 세부내용 규정

<첨부 1>

국가재정법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차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④ 삭제 <2008.12.31>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⑨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추계서

[본조신설 2010.5.17]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 자문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

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
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
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
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
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
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 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

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

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 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 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

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

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 삭제 <2008.12.31>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 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6장 보칙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제102조(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0228호, 2010.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첨부 2〉

국가회계법

[시행 2010. 5.17] [법률 제10289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영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08.12.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 삭제 <2008.12.31>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간 회계제도의 연계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 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국가채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본조신설 2008.12.31]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

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9279호, 2008.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89호, 2010. 5.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첨부 3〉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09.3.25] [대통령령 제21361호, 2009.3.25,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내
3.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

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 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불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당초 수입계획액
- 나. 수정 수입계획액
- 다. 징수결정액
- 라. 수납액

- 마. 불납결손액
- 바. 미수납액
-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당초 지출계획액
 - 나. 수정 지출계획액
 - 다. 전년도 이월액
 - 라. 지출계획 현액
 - 마. 지출액
 - 바. 다음 연도 이월액
 - 사. 불용액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 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성인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시행일 : 2009.7.31]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제21361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